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 소속기관에 마약 밀수에 대한 수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약조사3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5급 1명, 6급 2명, 7급 6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관세청 소속기관에 수출입 물품 안전관리를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1명(6급 3명, 7급 5명, 8급 2명, 9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 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인력 37명(6급 8명, 7급 10명, 8급 9명, 9급 8명, 관리운영9급 2명)을 감축하려는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1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관세청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 중 수입물품 현장검사 69명, 특송물품 현장검사 30명을 그 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기간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이 상향 조정하였던 세관관서의 정원 10명(6급 10명)을 종전의 직급(8급 10명)으로 환원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2. 12. ~ 12.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마약조사1과 및 마약조사2과”를 “마약조사1과, 마약조사2과 및 마약조사3과”로 한다.

제15조제31항 중 “마약조사2과장”을 “마약조사2과장 및 마약조사3과장”으로 한다.

제34조제6항 중 “1명(6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2명(6급 1명, 7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1명(6급 1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2명(6급 2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368”을 “365”로 하고, 일반직 계 “367”을 “364”로 하며, 관세주사 “95”를 “94”로 하고, 관세주사보 “76”을 “75”로 하며, 사무운영 서기보 “5”를 “4”로 한다.

별표 4의2 중 총계 “376”을 “373”으로 하고, 일반직 계 “375”를 “372”로 하며, 관세주사 “102”를 “101”로 하고, 관세주사보 “78”을 “77”로 하며, 사무운영서기보 “3”을 “2”로 한다.

별표 8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4,808”을 각각 “4,795”로 하고, 행정사무관 “123”을 “124”로 하며, 관세주사 “763”을 “760”으로 하고, 해양수산주사 “41”을 “40”으로 하며, 행정주사·공업주사·해양수산주사·기상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 또는 전산주사 “1”을 “2”로 하고, 관

세주사보 “879”를 “880”으로 하며, 공업주사보 “51”을 “52”로 하고, 해양수산주사보 “62”를 “61”로 하며, 위생주사보 1 다음에 “식품위생주사보 1”를 신설하고, 관세서기 “1,018”을 “1,013”으로 하고, 해양수산서기 “99”를 “98”로 하며, 관세서기보 “771”을 “773”으로 하고, 운전서기보 “79”를 “75”로 하며, 방호서기보 “35”를 “31”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88”을 “87”로 한다.

별표 8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4,818”을 각각 “4,805”로 하고, 행정사무관 “142”를 “143”으로 하며, 관세주사 “851”을 “838”로 하고, 해양수산주사 “45”를 “44”로 하며, 행정주사·공업주사·해양수산주사·기상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 또는 전산주사 “1”을 “2”로 하고, 관세주사보 “880”을 “881”로 하며, 공업주사보 “51”을 “52”로 하고, 해양수산주사보 “62”를 “61”로 하며, 위생주사보 1 다음에 “식품위생주사보 1”를 신설하고, 관세서기 “987”을 “992”로 하고, 해양수산서기 “96”을 “95”로 하며, 관세서기보 “728”을 “730”으로 하고, 운전서기보 “79”를 “75”로 하며, 방호서기보 “35”를 “31”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63”을 “62”로 한다.

별표 10 제2호가목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호나목1)의 평가기간란, 같은 목 2)의 평가기간란, 같은 목 3)의 평가기간란 및 같은 목 4)의 평가기간란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4) 인천세관 마약조사3과	10명 (5급 1명, 6급 2명, 7급 6명, 9급 1명)	2025년 9월 30일까지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관세청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관리운영9급 1명)과 세관관서 등 소속기관(관재인재개발원은 제외한다) 정원 34명(6급 7명, 7급 9명, 8급 9명, 9급 8명, 관리운영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세관) ① · ② (생 략)	제11조(세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인천세관에 세관운영과 · 감	③ -----
사담당관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및 협업검사센터를 두고, 항만	-----
통관감시국에 항만수출입물류	-----
과 · 항만통관정보과 · 항만물류	-----
감시1과 · 항만물류감시2과 · 항	-----
만통관검사1과 · 항만통관검사2	-----
과 · 항만통관검사3과 · 항만통	-----
관검사4과 · 항만통관검사5과	-----
및 신항통관과를, 공항통관감시	-----
국에 공항수출입물류과 · 공항	-----
통관정보과 · 공항물류감시1과	-----
· 공항물류감시2과 · 공항통관	-----
검사1과 · 공항통관검사2과 · 공	-----
항통관검사3과 · 장비관리과 및	-----
전산정보관리과를, 여행자통관1	-----
국에 공항여행자통관1과, 공항	-----
여행자통관검사관 9명, 여행자	-----
정보분석과, 항만여행자통관과	-----
및 항만여행자통관검사관을, 여	-----
행자통관2국에 공항여행자통관	-----
2과 및 공항여행자통관검사관 7	-----
명을, 특송통관국에 특송통관1	-----
과 · 특송통관2과 · 특송통관3과	-----

및 특송통관4과를, 심사국에 심사총괄과, 심사관 3명, 자유무역협정검증1과, 자유무역협정검증2과, 심사정보1과, 심사정보2과, 분석실 및 분석관을, 조사국에 조사총괄과, 조사관 6명, 조사정보과, 마약조사1과 및 마약조사2과를 둔다.

④ ~ ⑭ (생략)

제15조(인천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 ⑳ (생략)

<31> 마약조사2과장은 제30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제3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삭제

② ~ ⑤ (생략)

⑥ 제4항 본문 및 별표 8에 따라 세관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6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2명(6급 2명)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1명(6급 1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⑦ (생략)

---- 마약조사1과, 마약조사2과
및 마약조사3과-----
-----.

④ ~ ⑭ (현행과 같음)

제15조(인천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 ⑳ (현행과 같음)

<31> 마약조사2과장 및 마약조사3과장-----
-----.

제3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

----- 2명(6급 1명, 7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

----- 2명(6급 2명)은 원자
력안전위원회 -----
-----.

⑦ (현행과 같음)

신 · 구 정원 대비 표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관세청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368</u>		<u>365</u>	-3	
일반직 계	.		.		.		
	.		.		.		
			<u>367</u>		<u>364</u>	-3	
관세주사	.		.		.		
	.		.		.		
			<u>95</u>		<u>94</u>	-1	
관세주사보	.		.		.		
	.		.		.		
			<u>76</u>		<u>75</u>	-1	
사무운영서기보	.		.		.		
	.		.		.		
			<u>5</u>		<u>4</u>	-1	
	.		.		.		
	.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의2]

관세청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376</u>		<u>373</u>	-3	
일반직 계	.		.		.		
	.		.		.		
			<u>375</u>		<u>372</u>	-3	
관세주사	.		.		.		
	.		.		.		
			<u>102</u>		<u>101</u>	-1	
관세주사보	.		.		.		
	.		.		.		
			<u>78</u>		<u>77</u>	-1	
사무운영서기보	.		.		.		
	.		.		.		
			<u>3</u>		<u>2</u>	-1	
	.		.		.		
	.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

세관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4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		.		
			<u>4,808</u>		<u>4,795</u>	-13	
일반직 계			<u>4,808</u>		<u>4,795</u>	-13	
	.		.		.		
	.		.		.		
행정사무관			<u>123</u>		<u>124</u>	+1	
	.		.		.		
	.		.		.		
관세주사			<u>763</u>		<u>760</u>	-3	
	.		.		.		
	.		.		.		
해양수산주사			<u>41</u>		<u>40</u>	-1	
	.		.		.		
	.		.		.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해양수산 주사 · 기상주사 · 환경주사 · 시 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또는 전산주사	<u>1</u>	<u>2</u>	+1
관세주사보	<u>879</u>	<u>880</u>	+1
·	·	·	
·	·	·	
공업주사보	<u>51</u>	<u>52</u>	+1
·	·	·	
해양수산주사보	<u>62</u>	<u>61</u>	-1
·	·	·	
·	·	·	
<u>식품위생주사보</u>	<u><신 설></u>	<u>1</u>	+1
관세서기	<u>1,018</u>	<u>1,013</u>	-5
·	·	·	
·	·	·	
해양수산서기	<u>99</u>	<u>98</u>	-1
·	·	·	
·	·	·	
관세서기보	<u>771</u>	<u>773</u>	+2
·	·	·	

•	•	•	
운전서기보	<u>79</u>	<u>75</u>	-4
•	•	•	
•	•	•	
방호서기보	<u>35</u>	<u>31</u>	-4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88</u>	<u>87</u>	-1
•	•	•	
•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의2]

세관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		.		
			<u>4,818</u>		<u>4,805</u>	-13	
일반직 계			<u>4,818</u>		<u>4,805</u>	-13	
	.		.		.		
	.		.		.		
행정사무관			<u>142</u>		<u>143</u>	+1	
	.		.		.		
	.		.		.		
관세주사			<u>851</u>		<u>838</u>	-13	
	.		.		.		
	.		.		.		
해양수산주사			<u>45</u>		<u>44</u>	-1	
	.		.		.		
	.		.		.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해양수산 주사 · 기상주사 · 환경주사 · 시 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또는 전산주사	<u>1</u>	<u>2</u>	+1
관세주사보	<u>880</u>	<u>881</u>	+1
·	·	·	
·	·	·	
공업주사보	<u>51</u>	<u>52</u>	+1
·	·	·	
해양수산주사보	<u>62</u>	<u>61</u>	-1
·	·	·	
·	·	·	
<u>식품위생주사보</u>	<u><신 설></u>	<u>1</u>	+1
관세서기	<u>987</u>	<u>992</u>	+5
·	·	·	
·	·	·	
해양수산서기	<u>96</u>	<u>95</u>	-1
·	·	·	
·	·	·	
관세서기보	<u>728</u>	<u>730</u>	+2
·	·	·	

•	•	•	
운전서기보	<u>79</u>	<u>75</u>	-4
•	•	•	
•	•	•	
방호서기보	<u>35</u>	<u>31</u>	-4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63</u>	<u>62</u>	-1
•	•	•	
•	•	•	